

건설기계 점검·정비내역서

건설기계 소유자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기종)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	km hr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등록연월일		점검·정비의뢰일자			
건설기계 정비업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	주 소	(전화번호:)		
	점검·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정비책임자	(서명 또는 인)	
점검·정비내역					추가정비동의 여부	[]동의 []부동의
작업 내용		부 품				공임
		구분	수량	단가	계	
소 계			부 가 가 치 세		합 계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 기계 점검·정비내역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점검·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5제1항제2호).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2천시간 이내)의 건설기계: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9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6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6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 는 90일을 지난 것으로 봅니다)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6천시간 이내)의 건설기계: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6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4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400시간을 초과하는 때 에는 60일을 지난 것으로 봅니다)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가동시간 6천시간 이상)의 건설기계: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2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백시간을 초과하는 때 에는 30일을 지난 것으로 봅니다) 2.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1부를 발급하고, 건설기계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보관하여 야 합니다. 3.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계 제작사가 공급하는 신부품(제제조품 포함): A 나.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부품: B 다. 중고품(중고재생품 포함): C 라. 수입부품: F ※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 여야 합니다.						